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현행 발전용원자로의 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연료 교체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정기검사를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 설비의 성능 및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발전소의 이상징후·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업무대행자, 허가사용자 및 원자력관계면허응시자 대상 법 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및 기간을 변경(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를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 그 기간을 정기검사 종료 익일부터 다음 정기검사 종료일*까지로 함

*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의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

- 나. 업무대행 전담인력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간 업무대행 허용, 업무대행자 기록사항 보존기간 현실화(제71조제4항, 별표7제12호 개정)
- 다. 허가사용자의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 목적·사유를 명확화·현실화하고, 관련 용어 정비(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개정)
- 라.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기준일 명확화(별지 제100호 개정)
- 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증 서식 개선·정비(별지 제78호, 제79호, 제80호 개정)
- 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정기검사, 운반용기 설계(변경)승인신청서 오류 등 수정(제91조제3항, 별지 제82호, 제89호, 제90호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11~12월), 규제심사(‘24.1~1월), 시행(’24.3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에는”을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부터 받아야 하고,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완료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연료의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날부터 전출력(全出力)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실시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이후 전출력(全出力)운전을 재개한 다음 날 부터(다만,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최초의 상업운전일부터) 다음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이후 전출력(全出力)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2.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다음 날부터 24개월 이내
3.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에는 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연료의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날부터 전출력(全出力)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중 “이동사용하기”를 각각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홍보 등을 목적으로 진열·전시하기”를 “홍보를 목적으로 진열·전시·시연하기”로 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중 “이동사용”을 “사용”으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여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허가사용자 1명을 대행하는 것은 제3항의 신고사용자 2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91조제3항 중 “제103조”를 “영 제103조”로 한다.

별표 7 제12호나목1), 3), 5)의 보존기간란 중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할 때까지”를 “업무대행을 위탁한 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로 한다.

별지 제7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앞쪽 제5호 중 “폐기장소:”를 “사업소 주소:”로 하고, 같은 앞쪽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앞쪽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앞쪽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종류:

7.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용량:

별지 제8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중 “30일”을 “90일”로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중 “처리기간 120개월”을 “처리기간 12개월”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중 “처리기간 120개월”을 “처리기간 12개월”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필기시험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은 원자로시설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운영허가를 받은 원자로시설을 제외한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의 응시요건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0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변경허가, 허가증, 정기검사, 운반용기 설계승인·변경승인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8호, 별지 제79호, 별지 제80호, 별지 제82호, 별지 제89호, 별지 제90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변경허가, 정기검사, 운반용기 설계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증을 발급·재발급·기재사항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 (제145조 관련)

12. 업무대행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업무대행 실적		
1) 업무대행 내용 및 기간	업무 대행 때마다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2) 방사선작업 내용 및 결과	업무 대행 때마다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3) 방사선안전관리대행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전 관리대행 실적	업무 대행 때마다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업무대행을 위탁한 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2)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5년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업무대행을 위탁한 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4)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 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5)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업무대행을 위탁한 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6)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소	명칭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류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용량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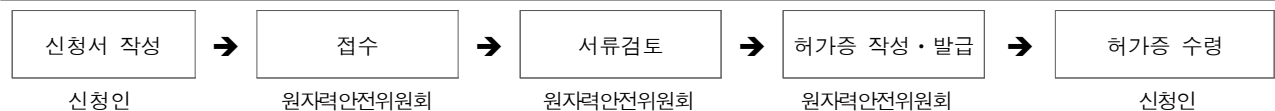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 안전성분석보고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 안전관리규정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2부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저장·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증

1. 상호:
2. 주소:
3. 대표자:
4. 사업소명:
5. 사업소 주소:
6.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종류:
7.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용량:
8. 허가조건: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직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8개월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소	명칭	
		주소	
신청 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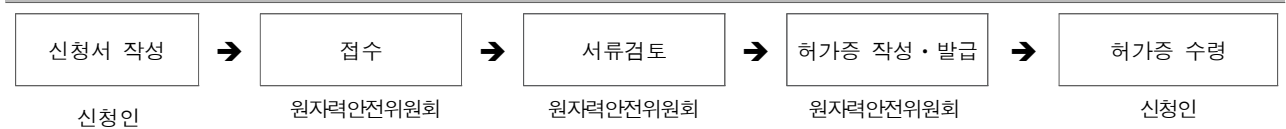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의 것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각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2부) 2. 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허가증 1부(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정기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전 화 번 호	
	허가시설범위		
검사희망장소	검사희망일자		

「원자력안전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1부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현장확인 및 검사결과 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 확인 신청인

운반용기설계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자분류		
	운반용기종류		

「원자력안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용기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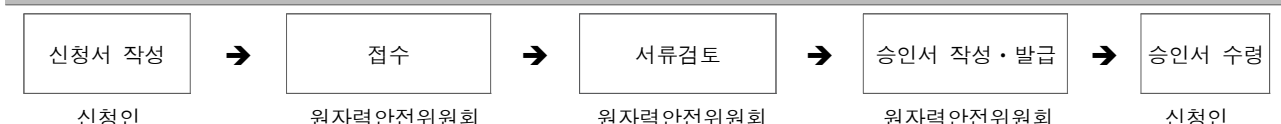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운반용기의 설계자료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품질보증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른 제작검사신청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안전성분석보고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성능시험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운반용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자분류		
	설계승인 번호		
	승인일자		
	설계변경 사유		

「원자력안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7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용기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승인서 작성·발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승인서 수령 신청인

(앞쪽)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				※ 응시번호	
①면허종류		②노형(爐型) 및 용량급		사진 3.5cm×4.5cm 인터넷 접수 시 20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로 등록 가능	
③성명	(한글)	(영문)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근무처		⑦전화번호			
⑧선택과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시험만 기재합니다)				
교육수료사항	⑨과정명		⑩수료연월일		
면허·자격 소지사항	⑪종류		⑫번호 및 취득 연월일		
시험면제	⑬근거		※ ⑮확인	⑰	
	⑭신청과목				
※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회 원자력관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면허발급 후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 1매 2. 시험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계인) <자르는 선>

응 시 표				※ 응시번호	
제()회 원자력관계면허시험					
면허종류		노형(爐型) 및 용량급			
선택과목		성명			
※ 시험면제 확인	⑰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①응시표 ②신분증 ③흑색 또는 청색 볼펜 ④계산기 ⑤컴퓨터용 사인펜(OMR답안지 작성시) 등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2. 응시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 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3. 필기시험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됩니다.

응시자 기재란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예정일	
	인터넷주소	

학력사항				
년 월 일	대학교	학과	년 · 재학 · 수료 · 졸업	
년 월 일	고등학교		년 · 재학 · 수료 · 졸업	
경력사항				
※ 경력사항은 최종학력 졸업 후(또는 면허·자격의 취득 후)의 경력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 (실·과단위까지 기재합니다)	업무담당내용	재직기간		
		부터 ~	까지	연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정기검사) ① (생략)	제19조(정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 검사는 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u>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u> <u>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u> <u>이내에,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u> <u>원자로의 경우에는 24개월 이내</u> <u>에 받아야 한다.</u> 다만, 원자로의 운영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검사 시기를 지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 검사는 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u>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u> <u>또는 검사를 받은 후 부터 받아야</u> <u>하고,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의</u> <u>경우에는 사용전검사 완료 후 또는</u> <u>검사를 받은 후 24개월 이내에 받</u> <u>아야 한다.</u> ----- ----- -----.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 검사는 <u>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u> <u>연료의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u> <u>정지한 날부터 전출력(全出力)</u> <u>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의 기간</u> <u>동안 실시한다.</u>	③ ----- ----- <u>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u> <u>실시한다.</u> 1. <u>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정기정비</u> <u>또는 핵연료 교체 이후 전출력</u> <u>(全出力)운전을 재개한 다음 날</u> <u>부터(다만, 최초로 상업운전을</u> <u>개시한 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u> <u>최초의 상업운전일부터) 다음 정기</u> <u>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이후</u> <u>전출력(全出力)운전을 재개하는</u> <u>날까지</u> 2. <u>연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u> <u>검사를 받은 다음 날부터 24개월 이내</u> 3. <u>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u> <u>에는 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연료의</u>

현행	개정안
④~⑦ (생략)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검정 또는 교정을 목적으로 <u>이동사용하기</u>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나. (생략) 다.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사업소 외에서 검문·검색 또는 보안을 목적으로 <u>이동사용하기</u>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u>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날부터 전출력(全出力)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u> ④~⑦ (현행과 같음)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 ----- ----- ----- ----- -----. 1. ----- ----- -- 가. ----- ----- ----- <u>사용하기</u> ----- -----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 ----- ----- <u>사용하기</u> ----- -----

현행	개정안
라. 방사선기기를 사업소 외에서 제품의 <u>홍보 등을 목적으로 진열·전시하기</u>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2. (생략) ②·③ (생략)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u>이동사용</u>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 ~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대행하여야 한다.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제103조에 따른 정	라. ----- ----- <u>홍보를 목적으로 진열·전시·시연하기</u> -----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신고) ① ----- ----- ----- ----- <u>사용</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여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허가사용자 1명을 대행하는 것은 제3항의 신고사용자 2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영 제103조</u> -----

현행	개정안
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u>부칙</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 -----.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u> <u>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은 원자로 시설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운영허가를 받은 원자로시설을 제외한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u> <u>제3조(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의 응시요건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u> <u>별지 제100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면허 시험부터 적용한다.</u> <u>제4조(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변경허가, 허가증, 정기검사, 운반용기 설계승인·변경승인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u> <u>별지 제78호, 별지 제79호, 별지 제80호, 별지 제82호, 별지 제89호, 별지 제90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로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u>

현행	개정안
	<u>허가·변경허가, 정기검사, 운반 용기 설계승인·변경승인을 신청 하거나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증을 발급·재발급 ·기재사항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 폐기물안전과	
연 락 처	(02) 397 - 7257
	(02) 397 - 7339
	(02) 397 - 7277